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02

발의연월일: 2021. 4. 23.

발 의 자:김민기ㆍ기동민ㆍ김성주

김진표 • 박성준 • 박완주

송재호 · 안규백 · 이재정

최종윤 · 홍정민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전사자, 순직자 및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순직자는 다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 등에 의해 Ⅰ·Ⅲ·Ⅲ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복무기간 중인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 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도중으로 사망원인에 '군 복무'라는 상황이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전공사상심사 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는 경우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유족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순직이 아님을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입증하는 경우 전사자 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함(안 제54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 직자로 추정한다. 다만,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가 순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사자 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자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 5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1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
			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순직자로 추정한다. 다만,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
			상심사위원회가 순직에 해당하
			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 제1
			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사자 또
			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일
			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